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9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목 차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 1
1-2. 금융위 • 금감원, 세종행 가닥 ····· 2
1-3.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 2
1-4.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 849km '동서트레일' 도전! ·····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2-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6
2-3.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7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3-1~12.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10~15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4-1. 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만 19세~34세 주목 ····· 17
4-2. 취약계층 • 농어촌 고교생 12만 명에게 '유료 AI 서비스' 제공 ····· 18
4-3. 맞벌이 •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메일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 ····· 19
4-4.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 20

5. 국외 정책 정보

5-1. 세계 지방정부는 어떻게 사람을 붙잡고, 불러오고, 정착시키는가 ····· 22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출처 :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1-2. 금융위·금감원, 세종행 가닥

○ 정부가 현재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개보위,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 시점과 청사 등 세부 계획은 조율 단계라고 알려졌다. 이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 금융위, 금감원 등의 지방 이전안이 확정되면 이미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재정경제부의 경제 정책 수립·총괄 기능에 이어 금융 규제·감독과 집행 기능도 서울을 벗어나 세종으로 가게 된다. 서울에는 행정 기능 가운데 외교·국방 등만 남게 되는 셈이다.

출처 : 세종시청(https://www.sejong.go.kr)

1-3.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

○ 지원대상 - 종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
변경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년 또는 장애인 가구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 질병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공동생활가정

○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 영아 가구의 수혜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1-4.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 849km '동서트레일' 도전!

- 국가유산 활용 '체류형 문화유산' 도입. 월드컵경기장 개선해 K-팝 공연도
- 주민 편의 복합센터 90곳 조성. 72곳 야외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지원 등

○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849km 동서트레일 구축

: 총 849km에 이르는 국내 최초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이 내년에 완전히 개통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정규코스 55구간, 북부지선코스 9구간 등 총 64구간으로 구성되는 국내 최초의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이다.

○ 문화·복지·돌봄 한곳에…복합센터 90곳 조성

: 세종시에는 동마다 커뮤니티센터가 잘 구비돼 있다. 특별히 할 일 없는 휴일날이면 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에서 소소한 여유를 누리곤 한다. 내년에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된다. 총 1조 50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90곳에 문화·복지·돌봄·창업 등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폭염·장마에도 운동 가능…지방에서도 대형 K-팝 공연

: 매주 일요일 아침 달리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달리기를 포기하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다. 그런 비겁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만한 예산도 있다. 전국 72곳의 테니스장과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지붕) 설치를 지원하는 생활체육 환경 개선 사업에 26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폭염과 장마, 강설 등 계절과 상관 없이 사계절 내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주요내용

-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2-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물의 범위)**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요내용

- 갈등유발 대상시설물의 명확한 범위를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3.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진천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물, 간식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내용

- 실종자의 범위를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실종자 수색 활동시 경찰에 국한되지 않고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와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업하려는 점포 또는 운영 중인 점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대표발의자 : 정부 / 발의일 : '26.09.03 / 의안번호 : 2221047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자 : 황명선 / 발의일 : '26.09.09 / 의안번호 : 2221249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확대하며,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등).

대표발의자 : 이광희 / 발의일 : '26.08.24 / 의안번호 : 2220708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산업·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대표발의자 : 이강일 / 발의일 : '26.08.26 / 의안번호 : 2220791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제재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음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 윤준병 / 발의일 : '26.09.09 / 의안번호 : 2221221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

○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차규근 / 발의일 : '26.08.28 / 의안번호 : 2220913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 · 개량 ·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업기반시설을 유지 · 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운영 · 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 · 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 정혜경 / 발의일 : '26.09.07 / 의안번호 : 2221129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이해식 / 발의일 : '26.08.27 / 의안번호 : 2220840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도의회는 35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이해식 / 발의일 : '26.08.27 / 의안번호 : 2220841

3-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 : 이해식 / 발의일 : '26.08.27 / 의안번호 : 2220842

3-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 : 양부남 / 발의일 : '26.09.03 / 의안번호 : 2221028

3-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자 : 임문영 / 발의일 : '26.09.08 / 의안번호 : 2221181

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폭염·한파·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도 예산. 만 19세~34세 주목

- 혼인지원금 100만 원·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청년 지원... 취업준비자금 신설

ㅇ 부모 혼인 • 출생

- 아이맞이 지원금 : 1,500만원(지방우대지역 첫째 기준, 연간 4회 분할지급)

ㅇ 영유아

- 아동기본수당 : 720만원(0~1세 24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 가정양육가산수당 : 720만원(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가정 양육시 월 30만 원 0~1세 24개월간 지급)

ㅇ 아동 • 청소년

- 아동기본수당 : 3,960만원(만 12세 도달시까지 132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ㅇ 대학생

- 지방국립대 등록금 : 전액 지원(4년간 등록금 부담 없음)
- 청년문화예술패스 : 240만원(만 19~34세 청년 대상 최대 연 15만원씩 매년 지급)

ㅇ 취업 준비

-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 : 390만원(저소득 취업준비청년에 구직촉진수당 지원)

ㅇ 직장 재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1,800만원(지방 중소 • 중견기업 취업시 최대 1,800만원 지원 근속 6.12.18.24월차에 분할지급)

ㅇ 혼인

- 혼인지원금 : 100만원(27년 1월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지급

4-2. 취약계층·농어촌 고교생 12만 명에게 '유료 AI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 신규 추진...28일까지 학교별로 신청

○ 교육부는 취약계층·취약지역 고등학생 12만 명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며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고등학교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3.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

-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픈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취업이나 생계활동, 한부모 돌봄 등으로 직접 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자녀를 둔 도민들 사이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시흥시 등 몇몇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 불과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없다 보니 시군 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확산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게 되었다.

○ 이번 조례안에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담겨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는 병원동행서비스, 집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 곁을 지켜주는 침대돌봄과 복약지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아울러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만들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아픈아동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4-4.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공동발의

-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력 높이는 계기 마련

○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① 용도별·위치별 현황 ②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③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④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⑤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을 함께 관계인을 비롯한 화재 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 대규모 지하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초기 대응, 소방대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진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세계 지방정부는 어떻게 사람을 붙잡고, 불러오고, 정착시키는가

- 이민을 '선발'에서 '정착'까지 연결하는 캐나다

○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주요 지역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다만 캐나다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구조로, 주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추천해도 전체 배정 규모와 영주권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 연방정부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의 노바스코샤 AIP 1년 정착률이 90%로 나타나지만 프로그램과 관찰기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대상과 기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고용주 연결은 출발점이지 완결이 아니다

- 이민정책에서 고용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자리 제안은 초기 정착과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 정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일자리와 주거, 자녀 교육, 차별 경험, 지역사회 관계 등이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 노바스코샤 사례는 이민자를 노동력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바라봐야 함을 보여준다. 지역이 갖춰야 할 것은 정착 이후의 주거 • 행정 • 언어 • 가족생활 • 사회관계의 기반이다.

○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 외국인력 정책을 '지역 정착정책'으로 확장한다

: 한국 지방정부도 외국인력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하 있다. 다국어 행정 • 노동 상담과 주거, 자녀 교육 • 의료 정보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성과 역시 유치 인원보다 6개월, 1년, 3년 뒤 얼마나 지역에 남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의회